

반듯한 노신사의 잊힐 권리

위원회를 방문한 A는 반듯한 인상의 노신사였다. 얼굴처럼 암전히 생긴 서류 봉투 하나를 손에 들고 위원회를 찾아왔다. 그분의 이야기는 이랬다. 자기가 B에 돈을 빌린 적은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생뚱맞게 C가 자신을 사기로 고소했고, 생각지도 못하게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고 했다. 항소심에서 C가 제출한 증거가 위조임이 밝혀졌고, 다행히 무죄 판결이 난 게 대여섯 달 전이란다. A의 고민은, A가 십오 년 전쯤에 고위 공무원이었던 이유로 그가 휘말린 1, 2심 재판 결과가 다수의 언론에 보도되고 포털에서도 이 보도들이 손쉽게 검색되는 것이었다. A는 기사 삭제까진 어렵더라도 포털에서만



이라도 검색이 되지 않게 하고 싶어 했다. 여기저기 백방으로 뛰어다녔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어서 몹시 피로한 기색이었다.

“70년 가까운 일평생 부끄럽지 않게 살았습니다. 이번 일 전까지 법원에 받을 들인 적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에 대해 송사 뉴스가 제일 앞에 뜹니다. 무죄 선고 보도가 있다고 해도, 사람들은 제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무죄 판결이 보도됐으니 괜찮지 않느냐’라고 말하기가 힘들기도 했다. 유무죄와 상관없이 사기죄에 휘말렸다는 사실 자체가 그의 평판에 꼬리표처럼 따라다닐 위험은 사실이기도 했다. 평범한 우리는 불법적이고 시끄러운 일에 연루된 자체만으로 그 사람에게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은지 의심의 눈길을 보내곤 하기 때문이다. A도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차라리 재판 내용이 자세하게라도 보도가 됐으면 덜 억울할 것 같은데, 대부분 단신으로 처리되어 더 억울하다고 했다.

모든 정보가 디지털로 기록되면서, 아날로그 시절 같으면 금방 잊힐 보도들이 이제는 없어지지 않고 인터넷 세상에 늘 상시 대기하는 상태가 되었다. 이제는 클릭 한 번이면 언제든지 쉽게 ‘재등장’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세상의 변화 탓에, ‘잊힐 권리’와 관련한 상담도 꾸준히 늘고 있다. 일전에는, D가 자녀의 혼사를 앞두고 포털에서 자신의 이름을 검색했더니, 90년대 중반 보도된 탈세 기사가 뜬다며, 기사 제목에 있는 자신의 이름을 지울 방법이 없는지 문의해왔다. 언론사 홈페이지의 원래 기사에는 D의 이름이 없고 포털 화면에 뜬 기사 제목에만 실명이 남아있는 특이한 경우여서, 포털 담당자에게 이를 설명하며 삭제를 부탁하니, 금방 삭제해 주었다. 이후 D는 살아갈 힘을 얻은 것 같이라며 정말 고맙다고 인사를 해왔다. ‘살아갈 힘’이라니, 너무 거창한 인사를 받은 것 같기도

했지만, 당사자에게는 중차대한 일일 수도 있겠다 싶어서 괜히 마음 한 편이 뿌듯해진 건 부인하지 못하겠다.

‘잊힐 권리’만을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다. 역사를 기록한다는 것은 인류의 특권이며 축복이고, 자칫 잊힐 권리의 강화가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도 있다는 염려는 당연하다. 이에 학계는 세밀하고 균형 있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준이 필요함을 심분 이해하면서도, 개인을 상담하다 보면 가슴이 앞서서 순간들이 있음은 한편으로 어쩔 수가 없다. 필자 아버지보다 연세가 많으신 노신사 분이 열심히 살아왔을 지난날들을 혼자 마음속으로 생각해보았다. 어쩌면 형사 소송 관련 기사를 덮을 다른 좋은 뉴스거리가 그 분 인생에 다시는 없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다. 시간이 흘러 A가 더 이상 이 세상 사람이 아닌 후에도, 사람들은 포털에서 손쉽게 A에 대해 검색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포털 검색에 대해서만큼은 좀 더 유연한 기준으로 접근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이미 무죄로 밝혀진 A의 범죄 혐의에 대해 한정 없이 모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일까. 위원회를 나서는 노신사의 발걸음이 쓸쓸해보였다.